

COSMETIC REPORT

발행처 (사)대한화장품협회

발행월 2021년 7월 셋째주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문 의 Tel : 02-785-7985

Fax : 02-782-6659

E-mail : jacklbs@kcia.or.kr



(사)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 Association

CONTENTS

화장품 정보 03

- 올해 1/4분기 보건산업 고용 95.3만 명, 전년비 3.1% 증가[장업신문] ----- 04
중국 화장품 의약품 수준으로 관리? [주간코스메틱] ----- 05
상반기 화장품 수출 46.2억달러 4년만에 두배로 꺾춤[CMN] ----- 05
<해외화장품시장동향>멕시코 화장품 수출 시 통관 관련 유의사항[코트라 해외시장뉴스] ----- 06

법령 정보 11

-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일부개정고시 의견 조회의 건 ----- 1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 안내의 건 ----- 13

협회 업무추진현황 14

- 미국 OTC Drug 제도 및 인허가 절차 웨비나 사전등록 안내 ----- 15
2021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선정 신청 안내 ----- 16
주요 수출대상국 웨비나 녹화 영상 접속 링크 안내 ----- 17
「중국 화장품 신규 규정 시행일 및 FAQ」 ----- 18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교육과정」 온라인 강의 실시 안내 ----- 22

회원사 뉴스 32

- <신규 회원사 소개>(주)엔도더마 ----- 33

화장품 정보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국내 화장품 산업계 동향**

마스크 팩 등 총 18품목 불법화장품 대규모 단속('21.7.14)

- 지난 7월 5일 국가약감국은 <2021년 하반기 국가 화장품 안전리스크 모니터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화장품 규정에 맞지 않는 불법화장품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 중점 모니터링 품목은 마스크류, 욕족류, 아동 화장품, 피부진정류, 주름개선 및 여드름 제거류, 가려움증 방지류, 생발성장 촉진류, 보습류, 눈케어류, 보디케어류, 스프레이류, 매니큐어류, 메이크업류, 샴푸류, '왕홍' 스킨케어류, 헤어케어류, 거미제거/미백류, 아동 치약류 등 총 18개임

- 관련링크:
<https://www.theb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33>

베트남, 디지털 플랫폼 기반 수출판로 개척 활발('21.7.14)

- 베트남 화장품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마이너스였으나 2021년 기점으로 활기를 되찾고 향후 5년간 연평균 10%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임
- 무협 시장전략실 김보경 수석연구원은 “K-뷰티는 베트남 화장품 수입시장에서 ‘18년 이후 5년째 1위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 고객 점점 확대, 매력적인 콘텐츠 제공 등 K-뷰티에 대한 구매 접근성 및 신뢰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음

- 관련링크:
<https://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6101>

올해 1/4분기 보건산업 고용 95.3만 명, 전년비 3.1% 증가('21.7.14)

- 2021년 1/4분기 보건산업 종사자 수는 95만3천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1%(+2만9천 명) 증가하였음.
- 진흥원 산업통계팀 신유원 팀장은 “계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등 보건산업분야 고용 창출은 타 산업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매우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업종별, 성별, 사업장 규모별로는 명암이 엇갈린다”고 밝히며, “코로나 19 이후 청년 및 여성 일자리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화장품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발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관련링크:
<http://www.jangup.com/news/articleView.html?idxno=83618>

화장품 가게, '무너지는 골목상권' 매출액 25% 이상 감소('21.7.12)

- 코로나19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골목상권이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전해진 가운데 각 업종 중에서도 화장품 가게와 옷가게 등 뷰티패션 잡화 분야에서의 가게 매출액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골목상권 자영업자(521명 응답)를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골목상권 현황 및 하반기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골목상권 자영업자 10명 중 8명(78.5%)은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작년 상반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관련링크:
<https://www.cosinkorea.com/news/article.html?no=39875>

中 새 화장품 법규 시행일정 공개('21.7.7)

- 중국 화장품 관련 법규의 제·개정과 이에 따른 변화 등으로 인해 국내 수출기업들의 업무진행이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가 새 규정의 시행일정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FAQ형식으로 정리해 발표했음
- 이에 따르면 일단 올해 5월 1일부터 원료정보 등록 부문 신규 허가·등록 제품의 경우에는 원료 제조사와 상품명 정보등록을 완료해야 함

- 관련링크: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0554>

중국, 화장품 효능 안전성 정보 등록 의무화('21.7.12)

- 30년만에 개정돼 올해 부터 시행중인 중국 화장품 법규와 제도가 중소기업 중국 시장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할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자국 화장품 산업 발전과 글로벌 규제동향을 정책에 반영해 30년만에 화장품 관련 조례를 큰폭으로 손질한 것은 이해 하지만 의약품 수준의 엄격한 규제와 효능,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 의무는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수 중소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에 애를 먹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개정된 중국 화장품 조례가 우리나라 중소화장품 기업 중국 시장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유예기간 연장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음

- 관련링크: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0541>

상반기 화장품 수출 46.2억달러 4년만에 두 배로 꺾춤('21.7.14)

-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세청 및 무역통계(KITA)를 기초로 잠정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6월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31.7% 증가한 7억2600만달러를 기록, 2분기 급등세를 이어 갔음
- 산자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도입으로 외부활동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 관광방문을 통한 구매가 수입품 구매로 일부 대체되면서 중국·아세안·미국 등 주요시장을 중심으로 상반기 화장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음

- 관련링크:

https://www.cmn.co.kr/sub/news/news_view.asp?news_idx=36495&flag=h

中 "식품 등급 화장품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21.7.14)

- 베이징 데일리는 대다수의 '식용' 혹은 '식품 원료'를 내세우는 화장품 마케팅은 속임수에 불과하며, '식품 등급' 화장품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보도했음
- 상품 판매 페이지에 무독성이나 순수성분이라고 광고하는 제품의 실제 성분 목록을 상세히 보면 대부분의 상품이 일반 화학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베이징 데일리는 지적했음

- 관련링크:

http://www.cmn.co.kr/sub/news/news_view.asp?news_idx=36428&flag=h

○ 해외화장품 시장 동향

멕시코 화장품 수출 시 통관 관련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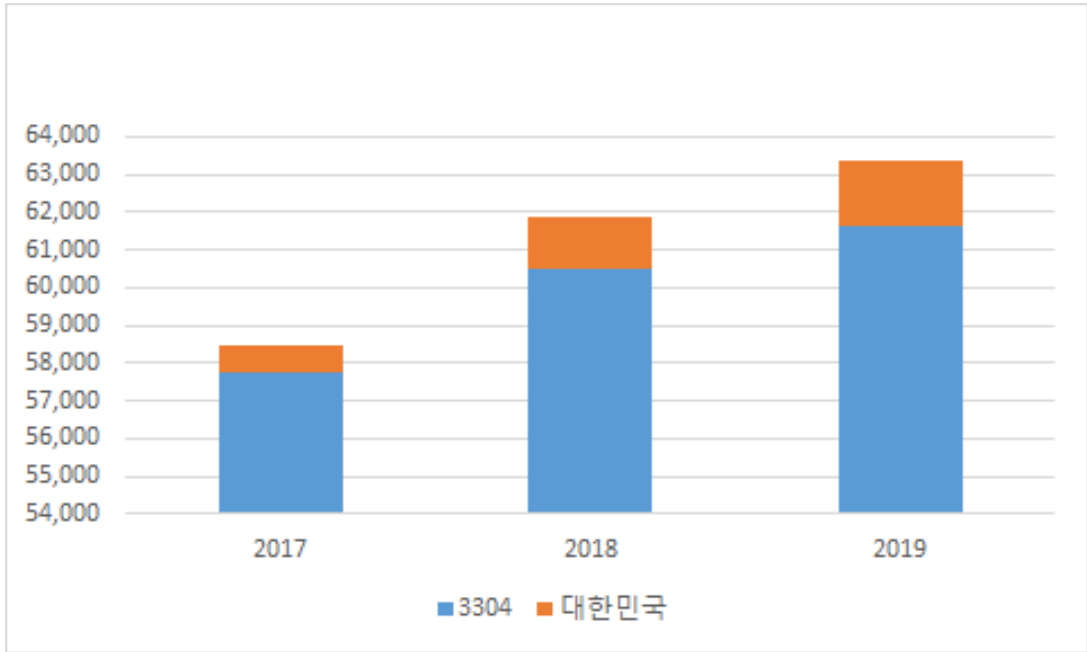
2021-02-22 멕시코 멕시코시티무역관 송희원

- 6억 달러 규모의 시장 진출 기회 노리려면 인증 등 절차 이해 필요 -
- 화장품시장 커지면서 인증, 통관 관련 세관 검사 엄격해져 -

시장 현황

2019년 멕시코 뷰티용품(HS CODE 3304*) 시장 규모는 6억1,650만 달러로 매년 1.32%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58% 꾸준히 성장했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2.6%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8~2020년 멕시코의 최대 수입국은 미국(점유율 26.6%)이며, 한국은 2019년 점유율 1.9%로 8위, 2020년 점유율 2.1%로 7위를 기록하였다.

멕시코 뷰티용품 전체 수입액 및 대한 수입액 추이(2017-2019년)
(단위: 만 달러)



자료: UN COMTRADE(2021.1)

화장품류 수입 통관 절차

수입 통관의 절차는 크게 수입신고 전후로 나뉜다. 수입신고 전에는 하기의 세 가지 사안을 확인해야 한다.

첫째, 수입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전에 공인된 관세사와의 업무 계약이 필요하다.

둘째, 멕시코 표준규격(NOM) 인증 신청을 마쳐야 한다.

셋째, 멕시코 식약청 위생등록(COFEPRIS)을 신청해야 한다.

수입 신고 시에는 관세 납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수입신고서
- 2) 송장 (Commercial Invoice)
- 3) 선하증권 (Bill of Lading), 항공일 경우 Airbill
- 4) 패킹 리스트(Packing List)
- 5)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do de Origen)
- 6) 수입허가서(필요한 경우)

송장의 경우 스페인어 외의 언어로 표기된 경우 스페인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일반 보건법에 따라 위 서류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해 멕시코 공식 표준규격(NOM) 관련 허가서 및 제품을 심사한다. 서류 및 제품 심사가 끝나면 수입 통관 절차가 완료된다.

주의사항

한국 기업이化妆품을 멕시코로 수출할 경우 현지 파트너 혹은 거래처가 멕시코 재무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입 가능업체 허가증에는 수입 취급 가능 품목과 유효기간이 명시돼 있으므로 수출 계약 시 수입 업체가 적법한 수입 허가를 받았는지 사전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량의 화장품 샘플을 통관할 경우에도 세관에서는 식약청 인증 및 공식 수입업자의 등록 서류 및 수입허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기업에서 바이어 배포 목적으로 샘플을 무작위로 송부할 경우 반송될 리스크가 있다.

정식 통관 시 제품 라벨링에 오류가 있거나 기타 다른 문제로 통관이 어려울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일단 보세 창고로 옮겨 문제를 해결한 후 통관하는 방법도 있다.

멕시코에 반입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성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기업 제품의 성분과 금지 성분에 대한 비교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통관 시점에 제품의 스페인어 라벨이 없을 경우 이 또한 제품 반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멕시코 표준규격 인증제도(NOM)

멕시코 공식 표준규격(NOM: NORMAS OFICIALES MEXICANAS)은 멕시코 수입 물품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제품 안전기준 및 라벨링과 관련된 규칙, 포장, 상품정보 등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의 공식 표준규격은 NOM-141-SSA1/SCFI-2012에 해당되며 통칭 NOM141로 통관 절차 이전에 제품명, 제품 성분 등에 대한 일반 정보 전체에 대해 스페인어 라벨링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화장품 관련 멕시코 표준규격 목록

NOM 인증	설명	시행일자	관련 링크
NOM-089-SSA1-1994	화장품 사전 심사 방법	1995년 10월 25일	https://bit.ly/3ch4Aqv
NOM-141-SSA1/SCFI-2012	포장된 화장품 라벨링, 위생 및 상업적 라벨링	2012년 9월 19일	https://bit.ly/3r39Z8P
NOM-141-SSA1/SCFI-2012	NOM-141-SSA1/SCFI-2012의 개정판	2014년 8월 15일	https://bit.ly/3opTZfo

자료: 멕시코 식약청(COFEPRIS), 멕시코 연방관보(DOF)

멕시코 연방관보의 향수 및 미용제품 제조 시 금지 및 제한 제제에 대한 협의(<https://bit.ly/3t5Ea0F>) 및 향수 및 미용제품 제조 시 금지 및 제한 제제에 대한 물질 제안 협의 규정(<https://bit.ly/3pGgEoQ>)을 준수한 항목은 사전 제품 등록 및 성분의 라벨링(스페인어) 작업을 선행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제품의 내용물이 제조 금지 및 제재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면 사전 심사가 필요하다. NOM 인증 신청에는 신청비용이 발생하며 소요기간은 품목별로 상이하나 통상 1주에서 2~3주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

* NOM 관련 라벨링 세부 내용 <https://bit.ly/3s5pFZI>

* NOM 인증 신청서 작성 <https://bit.ly/3k80dzR>

식약청 등록 절차(COFEPRIS)

멕시코 식약청(COFEPRIS; Comisión Federal para la Protección contra Riesgos Sanitarios), 일명 코페프리스(COFEPRIS; Comisión Federal para la Protección contra Riesgos Sanitarios)는 멕시코 보건부 산하 기관으로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제품(의료, 식품, 제약, 특정 기능성 화장품, 기타 등)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심사를 통해 멕시코 내 해당 제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기관이다.

화장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HS Code 3304 1001/ 2001/ 3001/ 9101/ 9999에 해당되며 관세율 10%에 부가가치세 16%가 부과된다. HS Code 3304, 9901은 관세율15%에 부가가치세 16%가 부과되므로 품목에 대한 HS Code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 내 반입을 위해 관세청에서 지정한 관세 납부 후 식약청 사전 승인 신청 양식 및 복사본, 관세 납부 증명서 및 멕시코 내 상품 반입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한다. 소요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심사 기간은 약 5~40일이다. 경우에 따라 소요기간은 축소 또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식약청 내부적으로 서류 검토 및 필요 시 상품 샘플 요청을 통한 자체 검사 시행 후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반입 승인 여부를 공지한다.

*사전 승인 신청서 양식은 식약청 홈페이지 <https://bit.ly/2LNg40A>에서 다운 가능

자료: 멕시코 식약청(COFEPRIS), 멕시코 연방관보(DOF), 멕시코 경제부(SE), 일반보건법(Ley General de Salud), 무역을 위한 국가정보 서비스(SNICE), 멕시코 화장품 상공회의소(Canipec), 대한민국 외교부, 한국무역협회, 통합무역정보서비스, 멕시코 일간지 El Financiero, El Economista, La Jornada,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 2. 22.〉

법령 정보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국내 법령 정보

○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 의견 조회의 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벤잘코늄염화물을 함유하는 외용소독제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사용을 도모하고자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붙임2]의 양식에 따라 2021년 7월 23일(금)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_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1부. 끝.

- 관련링크:

https://kcia.or.kr/home/edu/edu_01.php?type=view&no=13931&ss=page%3D%26skind%3D%26sword%3D%26ob%3D

※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 안내의 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벤잘코늄염화물을 함유하는 외용소독제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사용을 도모하고자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붙임2]의 양식에 따라 2021년 7월 23일(금)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_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1부. 끝.

- 관련링크:

https://kcia.or.kr/home/edu/edu_01.php?type=view&no=13931&ss=page%3D%26skind%3D%26sword%3D%26ob%3D

※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회 업무추진현황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예정 행사

○ 미국 OTC Drug 제도 및 인허가 절차 웨비나 사전등록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미국의 OTC Drug 제도 및 인허가 절차에 대한 무료 웨비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사전등록링크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OTC Drug는 FDA 등록 대상 제품이며, **자외선차단제**, 비듬 샴푸, 여드름 제품, 제한제, Astringent 효과가 있는 Skin Protectant(Salicylic acid가 들어간 제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아래 -

가. 일시: 2021. 8. 3(화), 10:00 ~ 12:00 a.m.

나. 참석대상: 미국 수출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

다. 참가비: 무료

라. 참석방법: 온라인 플랫폼(웨비나)을 통한 실시간 영상 송출

마. 주요내용: 미국의 OTC Drug 제도 및 인허가 절차

※ 세부 사항은 붙임의 웨비나 프로그램 참고

바. 참가신청: 아래 사전등록 링크를 통해 신청

- 참가신청자 대상으로 cisco webex 접속 링크 발송 예정

- 사전등록링크: <https://forms.gle/fsgQpDrSeZStiTgA6>

사. 신청기간: 붙임 자료 참조

※ 본 웨비나는 신청기간 내 **사전등록하신 분에 한하여**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 **참가 신청은 선착순 마감이며**, 참석 신청자가 많은 경우 안내된 신청기간보다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아. 참석방법: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웨비나 개최 1일 전에 URL링크가 메일로 발송될 예정이며, URL링크를 통해 cisco webex 웨비나 접속**

자. 언어: 영어 → 한국어 순차통역

※ 문의:

대한화장품협회 김경옥 부장(070-8709-8614, a007@kcia.or.kr)

붙임: 웨비나 프로그램 1부. 끝.

- 관련링크:

https://kcia.or.kr/home/edu/edu_01.php?type=view&no=13902&ss=page%3D1%26skind%3D%26sword%3D%26ob%3D

※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진 현황

○ 2021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선정 신청 안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수출 품목의 다양화·고급화와 미래 수출동력 확충을 위해 2001년부터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21년 세계일류상품 및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선정에 신청을 희망하시는 회사는 별지 양식 1호, 2호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시어 **8/30(월) 오후 6시까지** 우리협회로 우편 제출 및 파일 송부(담당자 : 이병수 대리, Tel: 02-785-7985, E-mail: jacklbs@kci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의 경우 품목을 세분화(예, 마스크팩, 달팽이크림, 수딩젤 등)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관련링크:

https://kcia.or.kr/home/edu/edu_01.php?type=view&no=13912&ss=page%3D%26skind%3D%26sword%3D%26ob%3D

〈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_제조업, 서비스업 통합 〉

구분	선정 기준
현재 세계일류상품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에 들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단, 서비스업 품목은 점유율과 상관없이 수출규모 기준(5백만불 이상)만 충족해도 가능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장성 및 성장성을 평가하여, 향후 7년 이내 현재 세계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받은 품목 1.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3.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단, 대내외 환경 변화로 수출 실적이 급증하는 상품은 심의를 통해 그 특수성을 인정 받을시 선정 가능***

*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품목의 국가수출액 산출이 어려울 경우 기업의 해당 품목 수출액으로 대체 가능. 2018-2020년 연평균 수출증가율(CAGR)은 -7.95%임

** 예시: 미래성장동력산업, 7대 유망서비스산업 등

*** 예시: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확대에 수출이 폭증하는 상품

※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수출대상국 웨비나 녹화 영상 접속 링크 안내

우리협회에서 2021년에 개최한 주요 수출대상국의 화장품 제도 및 인허가 절차에 대한 웨비나 녹화 영상 접속 링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강사님이 강의 녹화 영상 공유를 허용하신 경우에 한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아래 강의 녹화영상은 협회 Youtube 계정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Jft58am1esE4J-BwOR7utw>

브라질 화장품 제도 및 인허가 절차 웨비나

<https://www.youtube.com/watch?v=rQb1d7lj8Gg>

화장품 **영국(브렉시트)** 수출 웨비나

<https://www.youtube.com/watch?v=026NEAacxU>

중동 화장품 제도 및 인허가 웨비나

<https://www.youtube.com/watch?v=6Y20Jc5fJfA>

러시아 화장품 제도 및 인허가 절차 웨비나

<https://www.youtube.com/watch?v=ZmmGHrfNNt0>

위 강의의 강의자료 PDF 파일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웹사이트 => "교육" => "교육 자료실"

<http://helpcosmetic.or.kr/pc/edu/edu03.php>

◦ 「중국 화장품 신규 규정 시행일 및 FAQ」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월 1일	1월 1일	5월 1일 전 까지	5월 1일	1월 1일	5월 1일 전 까지	5월 1일
원료 정보 등록	신규 허가 등록 제품	원료 제조회사 및 상품명 정보 등록 (※ 원료 안전성 관련 정보 등록 플랫폼 오픈 시기 미정)	방부, 자외선차단, 향색, 염료, 기미제거 마백 기능이 있는 원료 안전성 관련 정보 등록			모든 원료의 안전성 관련 정보 등록		
	기존 허가 등록 제품						제품 차분 중 모든 원료의 안전성 관련 정보 등록	
제품 분류코드 제출	신규 허가 등록 제품	"화장품 분류규칙 및 분류목록"에 따라 제품 분류코드 입력						
	기존 허가 등록 제품			2021년 5월 1일 이전에 허가 등록 제품의 제품 분류코드 보완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	신규 허가 등록 제품		안전성평가자료 간소화 버전 또는 전체 버전 제출					제품 안전성평가자료 전체 버전 제출
	기존 허가 등록 제품							
기미제거 마백 및 탈모방지 제품 인체효능 평가보고서 제출	신규 허가 등록 제품		신규 제품의 인체효능평가보고서 제출	2021년 5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신청하여 허가를 취득한 제품의 인체효능평가보고서 제출				
	기존 허가 등록 제품						2021년 5월 1일 이전에 신청하여 허가를 취득한 제품의 인체효능평가보고서 제출	
제품 효능 클레임 평가 개요 제출 및 공개	신규 허가 등록 제품		효능 클레임 평가 개요 제출 및 공개	2021년 5월 1일~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허가 등록 제품의 효능 클레임 평가 개요 제출				
	기존 허가 등록 제품						2021년 5월 1일 이전에 허가 등록 제품의 효능 클레임 평가 개요 제출 및 공개	
화장품 라벨 신규 규정 적용	신규 허가 등록 제품				신규 규정에 부합해야 함			
	기존 허가 등록 제품						그 전에 허가 등록 제품은 신규 규정에 부합하도록 제품 라벨의 경신을 완료해야 함	

FAQ

품질안전책임자 지정 및 품질안전관리 체계 개요 제출 관련

Q. 화장품 허가인/등록인이란 무엇인가요?

- ▶ 화장품 허가인/등록인은 제품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화장품 허가인/등록인은 품질안전책임자를 지정하고, 품질관리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Q. 품질안전책임자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 ▶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제32조에 따라 품질안전책임자는 반드시 화장품 품질안전 관련 전문지식을 갖춰야 하고, 5년 이상의 화장품 생산 또는 품질안전관리 경력을 갖춰야 합니다.

Q. 화장품 등록/허가를 위해 품질안전책임자의 어떤 정보를 제출해야 하나요?

- ▶ "화장품 허가, 등록 자료 관리 규정" 제10조, 제13조에 따라 품질안전책임자의 정보 및 이력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는 성명, 신원 증명서류 유형 및 번호가 포함되어야 하고, 이력서는 관련 교육 배경, 업무 경력 및 기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 화장품 허가인/등록인이 제조사에 위탁생산하는 경우에도 허가인/등록인의 품질관리체계 개요를 제출해야 하나요?

- ▶ "화장품 허가, 등록 자료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허가인/등록인은 품질관리체계 개요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요표 양식(규정 별표2 참조)은 자체생산 또는 위탁생산의 경우로 구분되어 있으며, 위탁생산하는 경우는 생산기업 선정 및 관리 제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허가인/등록인이 동시에 자체 생산과 위탁 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버전의 품질관리체계 개요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Q. 허가인/등록인, 제조사(수탁생산에만 종사하는 경우 포함) 모두 대표자의 신원증명을 제출해야 하나요?

- ▶ "화장품 허가, 등록 자료 관리 규정" 별표1 "허가인/등록인 정보표", 별표6 "생산기업 정보표" 양식에 따라 허가인/등록인과 제조사 모두 대표자의 성명, 신원 증명서류 유형 및 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내책임자 관련**Q. 법규 개정 전의 경내책임자 수권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 ▶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경내책임자 수권서의 범위는 일반 화장품 등록에 한하며, 기업에서 나중에 특수화장품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수권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Q. 경내책임자는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 ▶ "화장품 허가, 등록 관리 방법" 제8조에 따라 허가인 또는 등록인이 국경 외에 있는 경우, 중국 국경 내의 기업 법인을 경내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경내책임자는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1) 허가인, 등록인의 명의로 화장품, 화장품 신원료의 허가, 등록 진행
 - (2) 허가인, 등록인을 협조하여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화장품 신원료 안전성 모니터링 및 보고 업무 수행
 - (3) 허가인, 등록인을 협조하여 화장품, 화장품 신원료의 회수 업무 수행
 - (4) 허가인, 등록인과의 협의에 따라 경내 시장에 투입된 화장품, 화장품 신원료에 대해 해당하는 품질안전 책임
 - (5) 약품감독관리부문의 감독검사 업무 협조

Q. 원래의 경내책임자가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변경 및 재수권이 가능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1) 원래의 경내책임자의 지정동의서(知情同意書)
- 2) 변경된 경내책임자가 이미 출시, 판매된 제품에 대해 품질 책임을 부담한다는 승낙서

Q. 수권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 ▶ 수권자, 피수권자, 수권범위, 수권기한 및 수권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내책임자가 이행해야 하는 5가지 책임에 대해서는 수권서에 언급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책임을 져야 합니다.

원료 안전성 정보 제출 관련

Q. 향후 중국으로 수출하는 화장품은 원료 안전성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 ▶ "화장품 허가, 등록 관리 방법" 제30조에 따라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이 화장품의 허가, 등록을 진행할 때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원료의 출처와 원료 안전성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원료 안전성 관련 정보란 무엇인가요?

- ▶ 원료 안전성 관련 정보는 원료 상품명, 원료 기본정보, 원료 제조공정약술, 필요한 품질통제요구, 국제권위기구 평가 결론, 안전성위험물질 한도 요구 등(양식 "화장품 허가, 등록 자료 관리 규정" 별표14 참조)이 포함됩니다.

Q. 원료 안전성 정보 등록 주체는 누구인가요?

- ▶ 원료 안전성 정보의 등록 주체는 원료 생산업체입니다.
화장품 원료 생산업체란 원료 안전성을 책임지는 기업을 가리키며, 원료 실제 생산업체, 원료 실제 생산업체와 동일 그룹에 소속된 계열사 또는 원료 위탁 생산행위 중 위탁기업일 수 있습니다.
경외 또는 경내 원료 생산기업은 직접 화장품 원료 안전성 정보를 보고할 수 있고,
경외 또는 경내 법인이기에 수권하여 원료 정보의 보고 및 유지보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수권 기업이 사용자 권한을 개통할 때 화장품 원료 생산업체가 발행한 수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권서에는 수권 관계 및 수권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고, 동일한 규격의 원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련 정보는 한 개의 기업에게만 수권할 수 있습니다.

Q. 원료 안전성 정보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 화장품 원료 생산업체는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원료 안전성 관련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원료 품질 및 안전 관련 정보 제출 기업 정보표"(양식 "화장품 허가, 등록 자료 관리 규정" 별표13 참조) 및 기업 주체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화장품 원료 품질 및 안전성 관련 정보 보고 권한을 개통하고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플랫폼은 구축 중에 있으며 구체적 오픈 시기는 미정입니다.

Q. 어떤 원료가 안정성 관련 정보 제출 대상에 해당되나요?

- ▶ 화장품 허가인/등록인이 허가/등록을 진행하는 제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에 대해 원료 안전성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Q. "기사용화장품원료명칭목록(2021년판)"에 수록된 원료도 원료 안전성 관련 정보제출 대상에 해당되나요?

- ▶ 허가/등록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에 대해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기사용 목록에 수록된 원료도 이에 해당됩니다.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품 처방에 사용된 모든 원료가 반드시 중국에서 사용된 이력이 있는 원료여야 하며, 중국에서 사용된 이력이 있는 원료인지 여부는 "기사용화장품원료명칭목록(2021년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용 목록에 없는 원료를 사용하려면 "화장품 허가, 등록 관리 방법" 및 "화장품 신원료 허가, 등록 자료 관리 규정"에 따라 신원료 허가를 취득하거나 등록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원료 안전성 관련 정보는 언제부터 제출하면 되나요?

- ▶ 본 규정에 대해서는 상황 별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 시행일은 "중국 화장품 신규 규정 시행 일정"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특수 용도 화장품에서 삭제된 품목에 대한 관리



분류	향후 감독관리
가슴미용, 바디슬리밍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피부 탄력 증진을 통해 해당 효과를 내는 것은 일반화장품으로 관리 · 인체 내부순환 또는 구조를 변경시켜 해당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약품으로 관리
제취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땀억제, 미생물 환경 조절 또는 냄새를 없애거나 가림으로 해당 효과를 내는 것은 일반화장품으로 관리
제모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제모, 화학제모 모두 일반 화장품으로 관리
육모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머리카락 끊김 방지 (물리적으로 커버하는 방식으로 손상된 모발 리페어) 제품은 일반 화장품으로 관리 · 일정 기능이 있는 탈모방지 (모공청결, 두피자양, 미생물 환경 개선, 유분 밸런스 조절) 제품은 특수화장품으로 관리 · 인체구조에 변화를 주는 것 (육모 제품)은 약품으로 관리

- 관련링크:

https://kcia.or.kr/home/edu/edu_01.php?type=view&no=13922&ss=page%3D%26skind%3D%26sword%3D%26ob%3D

※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교육과정」 온라인 강의 실시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규 사업 진출을 원하는 영업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대비를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 하였습니다.

이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교육과정](#)」을 온라인 강의로 개설하여 6월 25일부터 운영함에 따라 불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해당 교육과정은 교육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리 운영되며 협회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 래-

· [회원사대상]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교육과정 : 10만원

***회원사란? 협회 정관 제6조에 의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회사로서 매달 회비를 납부하고 협회 서비스를 제공받는 회사입니다.

(회원사 확인 : https://kcia.or.kr/home/inst/inst_company_list.php)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교육과정_일반 : 20만원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대비교육 신청하러

바로가기 : <http://edu.helpcosmetic.or.kr/main/index.jsp>

※ 해당 교육은 매년 받는 법정교육과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러시아(유라시아) 화장품 수출시 주의사항 (2021년 개정판)

본 보고서는 화장품 러시아(유라시아) 수출시 주의사항 자료의 2021년 개정판입니다. .

〈 보고서 목차〉

1. 관련 기관 및 규정
 - 관련 기관
 - 관련 규정
 - 인허가 구분
2. 용어 정의
 - 화장품 정의
3. 화장품 성분 관련 규제
 - 러시아의 화장품 성분 규제 체계
 - 화장품 배합금지 성분
 - 화장품 배합한도 제한 성분
 - 허용된 착색제
 - 허용된 보존제
 - 허용된 자외선 차단 성분
 - 제품 유형별 pH 기준
 - 중금속 기준
 - 미생물 기준
4. 화장품 라벨링
 - 화장품 라벨링 필수 요건
5. 국가 등록(State registration)
 - 국가 등록 대상 화장품
 - 신청인
 - 국가 등록에 필요한 서류
6. 적합성 인증(self declaration of conformity)
 - 적합성 인증 대상 화장품
 - 적합성 인증 절차
7. 주요 절차
 - 제품 등록 주요 절차

- 관련링크:

https://kcia.or.kr/home/edu/edu_01.php?type=view&no=13819&ss=page%3D1%26skind%3D%26sword%3D%26ob%3D

※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요국 수출시 주의사항 보고서 다운로드 안내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조사한 주요국가의 수출시 주의사항 보고서 파일을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국의 화장품 관련 제도, 수출 절차 개요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세안 수출시 주의사항

https://kcia.or.kr/home/edu/edu_01.php?type=view&no=13766&ss=page%3D2%26skind%3D%26sword%3D%26ob%3D

미국 수출시 주의사항

http://helpcosmetic.or.kr/pc/license/license03.php?ptype=view&idx=5143&page=1&code=law_notice

미국 OTC 모노그래프 개혁 관련

http://helpcosmetic.or.kr/pc/license/license03.php?ptype=view&idx=5207&page=1&code=law_notice

호주 수출시 주의사항

http://helpcosmetic.or.kr/pc/license/license03.php?ptype=view&idx=5142&page=1&code=law_notice

EU(유럽) 수출시 주의사항

http://helpcosmetic.or.kr/pc/license/license03.php?ptype=view&idx=5141&page=1&code=law_notice

일본 수출시 주의사항

http://helpcosmetic.or.kr/pc/license/license03.php?ptype=view&idx=5140&page=1&code=law_notice

러시아(유라시아) 수출시 주의사항

http://helpcosmetic.or.kr/pc/license/license03.php?ptype=view&idx=5139&page=1&code=law_notice

중동(GCC) 수출시 주의사항 : 사우디,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http://helpcosmetic.or.kr/pc/license/license03.php?ptype=view&idx=5148&page=1&code=law_notice

브라질 수출시 주의사항 (2021년 개정판)

https://kcia.or.kr/home/edu/edu_01.php?type=view&no=13717&ss=page%3D%26skind%3D%26sword%3D%26ob%3D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 수출시 주의사항 (2021년 개정판)

https://kcia.or.kr/home/edu/edu_01.php?type=view&no=13718&ss=page%3D%26skind%3D%26sword%3D%26ob%3D

인도 수출시 주의사항

http://helpcosmetic.or.kr/pc/license/license03.php?ptype=view&idx=5176&page=1&code=law_notice

○ 「2021 화장품 관련 법령집」 발간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화장품 영업자의 화장품법 이해와 준수를 위하여 화장품 관련 규정을 정리하여 「2021 화장품 관련 법령집」을 발간하였습니다.

※ 구매를 원하시는 경우 우리협회 홈페이지 [협회 소개]-[발간물 구매 안내] 메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인쇄책자입니다.

※ 책자 사이즈(12.5*18.5cm)



(인쇄책자 판매) 2021 화장품 관련 법령집

발간일	2021-03-17
비회원	30,000 원
회원사	15,000 원

자세히 보기

바로 구매하기

- 관련링크:

https://kcia.or.kr/home/inst/inst_book_list.php

◦ "화장품 대만 수출 절차 안내서" 발간 안내

협회에서는 '19년 7월 1일부터 전면 개정된 대만의 화장품 법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對 대만 화장품 수출절차를 자세히 소개한 “화장품 대만 수출 절차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세부내용 확인 및 책자 구매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 https://kcia.or.kr/home/inst/inst_book_view.php?no=33



○ [한국소비자원-화장품사업자정례협의체] 「올바른 염모제 사용을 위해 '염모 전 피부 테스트 잊지 마세요」

한국소비자원과 화장품사업자정례협의체에서는

「올바른 염모제 사용을 위해 '염모 전 피부 테스트 잊지 마세요」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자료는 SNS 게재 및 매장 방문 고객 안내 등 다양한 부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니 활용하시어 올바른 염모제 사용방법을 소비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 POP>

한국소비자원

화장품 사업자정례협의체

올바른 염모제 사용을 위해 염모 전 피부테스트

패취테스트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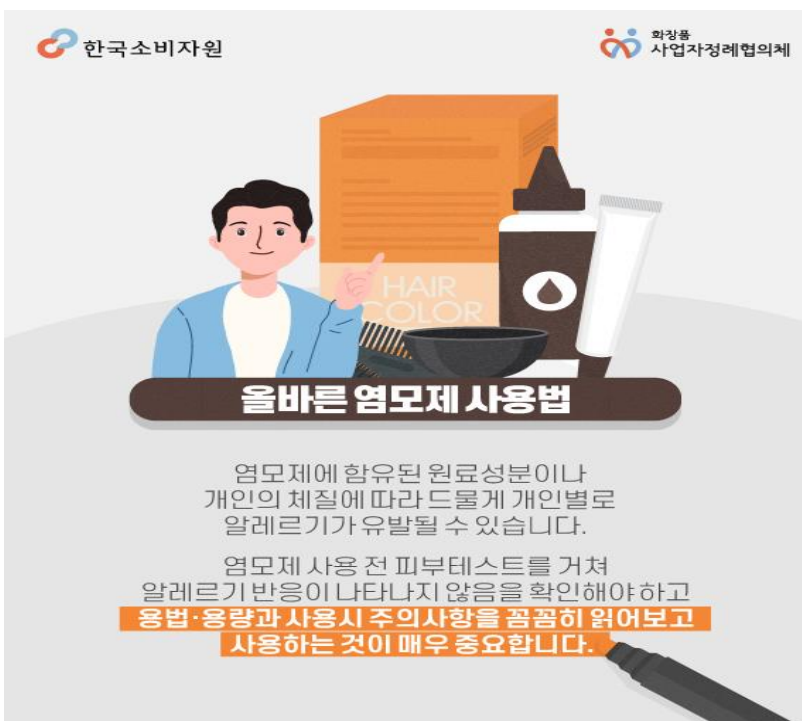
(patch test)

사용 2일 전(48시간 전)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매회 반드시 패취테스트를 실시합니다.

1. **팔의 안쪽 또는 귀 뒤쪽 머리카락이 난 주변의 피부를 비눗물로 잘 씻고 말지면으로 가볍게 닦습니다.**
2. **사용할 제품 소량을 취해 정해진 용법대로 혼합하여 테스트액을 준비합니다.**
3. **테스트액을 얇게 세척한 부위에 동전 크기로 바르고 자연 건조 시간 후 그대로 48시간 방치합니다.**
4. **테스트 도중 48시간 이전이라도 도포 부위에 발진, 가려움, 수포, 자극 등의 피부 이상을 느낀 경우에는 바로 테스트를 중지한 후 테스트액을 씻어내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5. **48시간 이내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바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첨부파일에는 세로버전과 가로버전이 각각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카드뉴스>



- 관련링크:

https://kcia.or.kr/home/edu/edu_01.php?type=view&no=13778&ss=page%3D%26skin%3D%26sword%3D%26ob%3D

※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화장품사업자정례협의체] 코로나19 상황 속 안전한 화장품 사용법

한국소비자원과 화장품사업자정례협의체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 실천을 위해, 화장품 이렇게 사용해요!」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자료는 SNS 게재 및 매장 방문 고객 안내 등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니 활용하시어 코로나19 예방 및 건강한 화장품 사용에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 실천을 위해, 화장품 이렇게 사용해요!」




코로나19 예방 개인위생 실천을 위해

화장품 이렇게 사용해요!



+ 내 화장품 청결하게 사용



내 화장품은 나만



사용 전 손 씻기



용기는 청결하게



미용 도구 자주 세척

+ 마스크 착용으로 지친 피부 관리



마스크 안 피부 환기



충분한 보습, 자외선차단제



자극 없이 꼼꼼한 클렌징



얼굴 만지지 않기



오염된 마스크 재사용하지 않기



+ 매장 내 에티켓



01 매장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02 테스트 제품 이용 전/후 손 소독제 사용하기



03 테스트는 입술, 눈이 아닌 손목, 손등에 하기



04 테스트는 손이 아닌 꼭! 도구 활용하기




○ "대한화장품협회"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맺는 방법 안내

"대한화장품협회"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맺는 방법을 알기 쉽게 동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맺고 실시간으로 화장품 최신 정보를 공유하세요!

<https://youtu.be/aw-TudxC4ss>

▶ 카카오톡 친구에게 드리는 혜택

- 1. 화장품의 법령, 정책 정보
- 2. 화장품과 관련된 교육 정보
- 3. 해외 수출 정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성공하는 습관

대한화장품협회 플러스 친구 맺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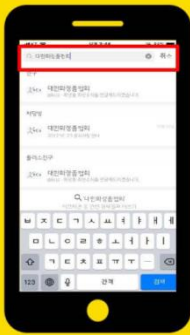
화장품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화장품협회랑 친구맺기



카카오톡에 접속한 후
더보기 클릭



검색창에
대한화장품협회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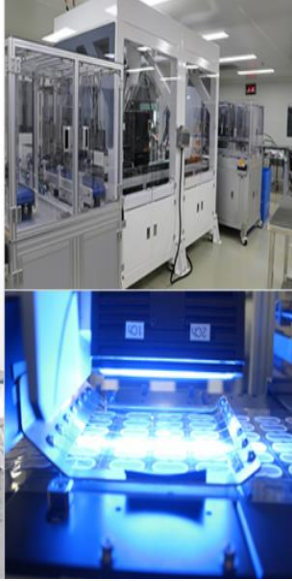
대한화장품협회
친구 추가

회원사 뉴스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신규 회원사 소개

(주)엔도더마



- ▶ 회사명 : (주)엔도더마
- ▶ 대표자명 : 박상진
- ▶ 설립일자 : 2015. 01. 09.
- ▶ 종업원수 : 38명
- ▶ 품목 및 브랜드 : 화장품 (패치형 화장품, 스킨케어 외 제품) / 엔도스킨, 니들리
- ▶ 2020년 매출액 : 2,328 백만원
- ▶ 자본금 : 2,516 백만원 (2020년 기준)
- ▶ 유통채널 : 시판
- ▶ 웹사이트 : <http://endoderma.co.kr>
- ▶ 연락처 : 070-7701-3770

회사소개

(주)엔도더마는 피부 침투 약물 전달 기술(TDDS)을 연구개발하여 진정한 의미의 마이크로구조체 기술을 개발·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젤 상태의 교차히알루론산을 접목, 고효율 TDDS를 활용하여 피부에 좋은 성분을 피부 깊숙이 전달되도록 설계하여 피부 고민 별 효과적인 spot care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엔도스킨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중국, 홍콩, 아세안 등 25여개국 수출 계약 완료하였으며,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세계 3대 발명대전 중 하나인 제네바 발명 전시회 2관왕을 석권하였습니다.

효과와 직결되는 제품을 고품질로 유지하기 위해 (주)엔도더마의 마이크로니들은 최첨단 자동화 설비로 생산되며, 고품질 제품 생산을 위한 최첨단 2D/3D Vision Inspection System 도입으로 철저하게 마이크로구조체의 높이, 배열, 유무, 위치까지 검사합니다. 전 공정의 확실한 품질관리 및 품질 보증을 통해 고객사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고품질로 공급합니다.

○ [회원사] 중국 수출 최신 정보 알림 신청 안내

1. 우리 협회는 협회 회원사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중국 수출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이메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중국 화장품 관련 최신 법령
- 중국 수입 화장품 등록 신청 동향
- 중국 수출교육/세미나 일정 안내
- 중국 수출, 법령 관련 세미나 내용 요약
- 중국 수출 지원사업 안내
- 기타 중국 수출에 도움되는 정보

2. 관련 정보를 받아보시고자 하는 대한화장품협회 회원사의 중국 업무 담당자께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협회 회원사 가입 여부 확인 방법:

대한화장품협회(www.kcia.or.kr) 홈페이지 접속 → 협회소개 → 회원사 소개 → 회사명 입력 및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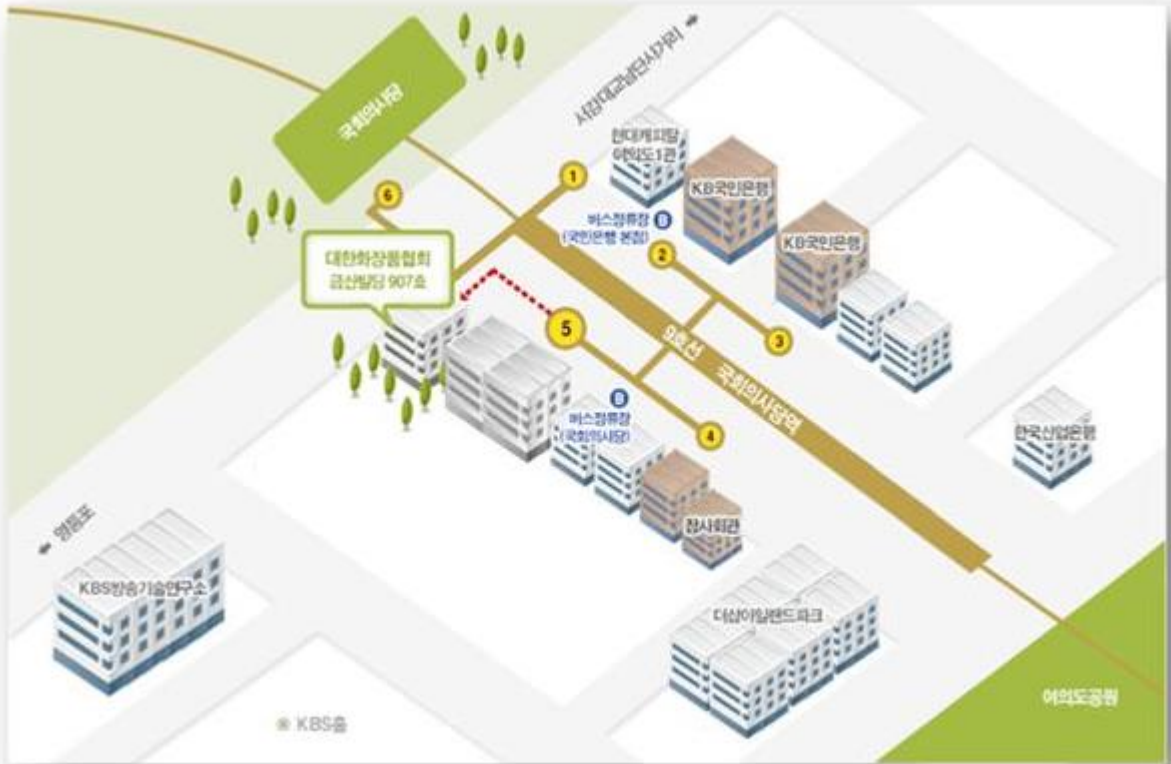
※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원 가입 안내

회원 가입 안내

구비서류	① 대표자 이력서 ② 회사소개 ③ 회사연혁 ④ 사업전개방향 ⑤ 제조판매업등록증(제조업등록증) 사본 ※가입신청서양식은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부 1부 1부 1부 1부
회원의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회원 -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회원 - 화장품 판매자, 원료제조·공급자, 화장품연구기관, 화장품구 제조업자
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회원 - 입회비: 월회비 × 12월 - 월회비: 매출액에 따른 차등 적용(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 전년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입회비 1,800,000원, 월회비 150,000원 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회원 - 입회비: 500,000원(정액) - 월회비: 정회원의 2/3 적용
회원가입시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회 의결권 ▪ 회원사 애로 사항 대정부 건의 ▪ 해외마케팅 지원(중국 상해, 중국 광주, 홍콩, 인코스메틱글로벌 전시회 한국관 참가지원) ▪ 영문증명서 발급 ▪ GMP 컨설팅 ▪ 해외 수출에 필요한 정보 제공 ▪ 국내 변화정보(법령, 시장 통계, 해외 인허가 대행 명단)제공 ▪ 성분사전(온라인) 정보 제공 ▪ 화장품 관련 정부 실시간 제공(홈페이지, SNS, 코스메틱리포트) ▪ 중국 수출관련 심층자료 제공 ▪ 중소기업 포상 확대 ▪ 회원사 친목 도모를 위한 정보교류 강화(조찬간담회, 정기총회) ▪ 협회 주최 교육(세미나) 등록비 할인 <p>수수료 우대 혜택(발간물, 영문증명수수료, 광고자문, 성분사전) 회원사 홍보(신규회원, 경조사등 홈페이지에 홍보)</p>	
회원가입절차		
문의	대한화장품협회 경영지원팀 Tel 070-7858-0564	

○ 협회 주소 및 연락처



Tel 02-785-7984 Fax 02-782-6659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홈페이지 www.kcia.or.kr

협회 SNS를 통해서도 함께해요~!



www.facebook.com/hikca



(사)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 Association